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2호 2020. 5. 1.(금요일)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18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2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59호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 · · · · · · 1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0-73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김인0) · · · · · · · · · · · · · · · · · · · 23
○ 하동군 고시 제2020-75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최분*) · · 26
○ 하동군 고시 제2020-7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2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611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32
○ 하동군 공고 제2020-612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35
○ 하동군 적량면 공고 제2020-11호 2020년 적량면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참여자 모집 공고(3차) 38
○ 하동군 공고 제2020-630호 여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 · · · · · · · · 43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18 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정보, 소방, 그 밖의 공사의 입찰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4. 기타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와 토지매입, 추정금액 1억원 이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군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과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

1.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교부

④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1.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5백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3. 5십만원 이상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의 경비

② 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재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분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 부 업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군수
	담 당		과소장	국소장	부군수	
	담당자	담당				
12. 예산집행 품의						
가. 공사 또는 토지 매입	기안					
1) 추정금액 5억원 초과	기안					○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	기안				○	
3)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		
4)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기안		○			
나. 제조 및 용역	기안					
1) 추정금액 3억원 초과	기안					○
2) 추정금액 3억원 이하	기안				○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4)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기안		○			
다. 기타	기안					
1) 추정금액 1억원 초과	기안					○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3)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		
4)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기안		○			

②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

③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

④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칠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과장, 각 과 세외수입담당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소관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부채업무담당국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	–
통 합 지 출 관	지출업무담당과장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각 과 세외수입담당	의사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과 경리업무담당	–	각 과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
회 계 책 임 관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분 임 징 수 관	–	–
재 무 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	–
부 채 관 리 관	–	–
총괄기금관리관	–	–
통 합 지 출 관	–	–
지 출 원	–	읍·면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담 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출원이 없는 관서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5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59 호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

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 구축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 · 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7.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개인정보 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동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상남도교육감에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증거확보,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한 구조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제의 범위) ①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수임) ① 군수는 하동경찰서, 하동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 연계 ·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

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하동군, 하동경찰서, 하동교육지원청 등의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하동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하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관리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심의 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하동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과장, 하동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2. 하동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제22조(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의 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하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20-73호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주 소			
성명(법인명)	김인0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고전면 전도리 1296-1번지 인근 : 고전면 전도리 1084-1		
목 적 및 면 적	30㎡		
최 초 허 가 일	2020년 4월 15일		
점 용 기 간	2020. 4. 15. ~ 2025. 4. 14.		
허 가 조 건	1. “붙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4월 15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변경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3. 본 점용으로 발생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 허 가자 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8.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9.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3.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하동군 고시 제2020-7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최분*		생년월일		
	주 소					
개 간 장 소		군	면	리		
		하동	화개	부춘		
개간의 용도		전작재배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대가	
		477	임	722㎡		
		산65		256㎡		
지정착수시기		2020. 4.				
공사비예정액		60,000천원				
승 인 조 건		개간사업 시행인가조건 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20년 4월 27일

하 동 군 수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군	면	리	지번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화개	부춘	477	임야	722㎡,	722㎡					
			산65	임야	9,223㎡	256㎡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하동군 고시 제2020 - 76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357-9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4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34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6외 6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4.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228-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357-9	2020 0428		2009 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495	경상남도하동군 금남면경충로 302-5	2020 0428		2009 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53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535-3	2020 0428		2007 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502-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548-1	2020 0428		2007 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20-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17-35	2020 0428		2007 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94	2020 0428		2009 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20-2, 621-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87	2020 0428		2009 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 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1008-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222	2020 0428		2007 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394-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112-11	2020 0428		2007 0618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 자여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394-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112-8	2020 0428		2007 0618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 자여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409-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112-17	2020 0428		2007 0618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 자여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2길	2020 0428		2007 0618	매화꽃이 흐르는 계곡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부여	609-15	54-11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323-2, 323-6, 323-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밤골길 130-3	2020 0428		2009 0302	밤이 많이 생산되어 지역적특성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642-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1길 12-53	2020 0428		2009 0302	중대리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 건물번호 합병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3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34	2020 0428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34-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34	2020 0428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당산길 39-1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당산길 39-9	2020 0428		2008 0402	마을고유명칭에 특정물을 반영하여 궁항당산길로 명명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당산길 39-9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당산길 39-9	2020 0428		2008 0402	마을고유명칭에 특정물을 반영하여 궁항당산길로 명명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1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15	2020 0428		2007 0618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북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1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15	2020 0428		2007 0618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북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 건물번호 폐지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6		20200428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판폐지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64		20200428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판폐지	2007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00		20200428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판폐지	2007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39-2		20200428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판폐지	20070618	매화꽃이 흐르는 계곡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29-3		20200428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판폐지	20070618	매화꽃이 흐르는 계곡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39-5		20200428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판폐지	20070618	매화꽃이 흐르는 계곡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45-13		20200428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물번호판폐지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하동군 공고 제2020 - 611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4.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4-3 ~ 하동읍 읍내리 190-2
라.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개설 L=239m, B=12m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바.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2020. 4. 24. ~ 5. 8.
나. 공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하동읍 군청로 23)
- 공람방법은 공람기간 중에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번호	위 치			지 적(㎡)		지장물	소 유 자
	읍 면	지 번	지 목	총지적	편입면적		
1	하동읍 읍내리	174-3	답	1,154	282	1식	추*기
2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김*우 지분 1,028/2020
3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강*성 지분 496/2020
4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김*이 지분 248/2020
5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천*희 지분 248/2020
6	하동읍 읍내리	188-1	답	2,453	136	1식	전*구 지분 1157/2453
7	하동읍 읍내리	188-1	답	2,453	136	1식	조*임 지분 800/2453
8	하동읍 읍내리	188-1	답	2,453	136	1식	진*곤 지분 496/2453
9	하동읍 읍내리	188-2	답	1,540	351	1식	황*덕
10	하동읍 읍내리	190-2	답	836	185	1식	이*희
11	하동읍 읍내리	190-3	답	1,190	267	1식	박*재 지분 1/2
12	하동읍 읍내리	190-3	답	1,190	267	1식	박*철 지분 1/2
13	하동읍 읍내리	191-1	답	2,010	517	1식	권*순
14	하동읍 읍내리	194-2	답	2,521	617	1식	강*중

4.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5-880-2238)으로 문의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안건	하동군계획시설【도로 :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의견제출자	성명	Tel)
	주소	
주민의견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 - 612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4.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173-2 일원
라. 사 업 량 : 도로확장 L=410.02m (전체 L=602m 중 금회 시행)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바.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2020. 4. 24. ~ 5. 8.
나. 공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하동읍 군청로 23)
- 공람방법은 공람기간 중에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번호	위 치			지 적(㎡)		지장물	소 유 자
	읍 면	지 번	지 목	총지적	편입면적		
1	하동읍 읍내리	173-2	대	170	170	1식	서*경
2	하동읍 읍내리	173-4	대	797	165	1식	정*근
3	하동읍 읍내리	173-3	답	2,007	164	1식	남*태
4	하동읍 읍내리	174-1	답	1,319	110	1식	조*수
5	하동읍 읍내리	174-2	답	2,750	228*1/2	1식	이*호
6	하동읍 읍내리	174-2	답	2,750	228*1/2	1식	이*근
7	하동읍 읍내리	174-3	답	1,326	172	1식	추*기
8	하동읍 읍내리	194-2	답	2,691	171	1식	강*중
9	하동읍 읍내리	194-1	답	1,997	161	1식	이*순
10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90	113*3/7	1식	강*순
11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90	113*2/7	1식	박*규
12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90	113*2/7	1식	박*훈
13	하동읍 읍내리	193-2	종교용지	1,058	16	1식	재단법인 원*교
14	하동읍 읍내리	193-4	종교용지	628	15	1식	재단법인 원*교
15	하동읍 광평리	2-3	답	370	370	1식	이*성
16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	476*992/4198	1식	김*인
17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	476*661/4198	1식	김*인
18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0	476*446/4198	1식	김*인
19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	476*2099/4198	1식	최*순
20	하동읍 광평리	265-2	철도용지	7,032	402	1식	국(국토교통부)
21	하동읍 광평리	80	철도용지	17,456	83	1식	국(국토교통부)
22	하동읍 광평리	6-1	답	1,954	48	1식	이*자
23	하동읍 비파리	743	답	3,140	280	1식	이*재
24	하동읍 비파리	760-4	대	362	8	1식	강*중
25	하동읍 비파리	760	대	660	13	1식	강*중

4.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5-880-2238)으로 문의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안건	하동군계획시설【도로 :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의견제출자	성명	Tel)
	주소	
주민의견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적량면 공고 제2020-11호

2020년 적량면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참여자 모집 공고

주요도로변 및 생활 가시권 등에 분포하고 있는 덩굴류(칡)를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덩굴류 제거반 참여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적 량 면 장

1. 모집인원 : 2명

※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0. 4. 27.(월) ~ 5. 7.(목) (9:00 ~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5. 접수장소 : 적량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6. 작업형태 : 주요 도로변 경사지에서 작업도구(괭이, 곡갱이, 낫, 손톱)을 사용, 칡뿌리 주변의 토사를 최소 깊이 10cm까지 절토하여 칡뿌리를 절단 채취하는 작업

7.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적량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다. 운전면허와 차량(본인 명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보유 기동력이 있는 자

라.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8. 응시자격의 제한

가. 칡 등 덩굴류 제거작업을 위한 작업과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9.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차량(이륜차)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서 1부

마. 재산세 등 완납여부 확인(※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실기(필요시)

다. 3차 심사 : 면접(필요시)

11. 합격자 발표 : 2020. 5. 8.(금) / 개별통보

※ 실기 및 면접시험 시행 시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음.

12. 근로기간 : 2020. 5. 11. ~ 2020. 6. 30.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1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9:00~18:00)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다. 임　　금 : 68,720원/1일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마. 1개월간 계속 참여 시 월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종사업무

가. 주요도로변 가시권 칡 등 덩굴류 제거

나. 소공원내 칡 등 덩굴류 제거

다. 기타 산림업무

15.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적량면 산업경제담당(055-880-6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덩굴류 제거작업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교육 이수	교 육 명	교육 일수	비 고			
				1.	주				
				2.	주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 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력사항	① ② ③
기타사항 기술 (본인)	차량 소유여부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붙임 2〉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상용)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②연락처	전화번호(*) (선택 가능)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전자우편수신 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도 ( )구・군 2순위 ( )시・도 ( )구・군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 선택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파견근로		
			[ ]시간제 ※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원하는 경우		
	병역특례취업희망		[ ]현역병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시간, 기숙사・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구직알선희망정도	[ ]알선 필요 [ ]알선 필요하지 않음
구직정보 제공 동의 여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 ]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조회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고용보험가입 이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알선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630호

여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0. 4. 28.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ha)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여의 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623-1	50	JSBR 공법	20	분류식	2020.4.26.

❍ 방류수질

처리장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범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법 적 수 질	10.0	40.0	10.0	20	2	3,000이하
	방 류 수 질	0.9	1.7	0.3	2.6	0.4	0

(단위 : mg/L)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여의 소규모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 여의천→섬진강하류

2. 사용개시(공고)일

- 2020. 4. 28.

3. 기타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